

「평창군 노동계곡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4. 12. 31(수) 평창군수(문화관광과장)

나. 회부일자 : 2015. 01. 13(화)

다. 상정일자 : 2015. 01. 19(월) 제20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자 :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평창군 캠핑장이 추가로 조성되고 있으나, 현재 ‘평창군 노동계곡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만 제정되어 있어 평창군이 조성한 모든 캠핑장에 적용 가능한 조례가 필요함.
- 평창군이 조성한 캠핑장의 수탁자 선정 시 관내군민에게 기회를 확대 적용하고 캠핑장내 증가한 시설물 종류와 사용료를 현실적으로 조례에 적용할 필요가 있음.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홍금숙)

- 본 조례 개정안은 “평창군 노동계곡 오토캠핑장”에 한하여 규정

되었던 조례를 “꿈의대화 캠핑장” 추가조성에 따라, 조례의 제명 변경 등 평창군이 조성한 캠핑장 운영 및 관리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 조례의 제명을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 “꿈의대화 캠핑장”조성에 따른 캠핑장 시설 중 돐형텐트, 돐 하우스, 주막거리 전통가옥, 캠핑데크 등 신규로 설치된 시설물 명칭을 명확히 규정하고 시설사용료를 추가하여 캠핑장의 효율적 운영
- 캠핑장 위탁에 따른 수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여 군민 참여 기회를 확대 등,

○ 조례의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노동계곡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노동계곡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노동계곡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 노동계곡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평창군 노동계곡 오토캠핑장”을 “평창군이 조성한 캠핑장”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대상)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노동계곡 오토캠핑장과 평창군 대화면 꿈의대화 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적용한다.

제3조제4호 중 “카라반), 오토캠핑장, 카라반사이트, 다목적운동장”을 “카라반, 돐형텐트, 돐하우스, 주막거리 전통가옥), 오토캠핑장, 캠핑데크, 카라반사이트, 다목적운동장, 다목적무대”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카라반”을 “카라반, 돐형텐트, 돐하우스, 주막거리 전통가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카라반사이트”를 “카라반사이트, 캠핑데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목적운동장, 야외무대, 다목적무대

제7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캠핑장 운영 능력 및 안전확보를 위한 전문성(경력)

제7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 중 “관광개발업무”를 “주관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행할 인력,”를 “수행할”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평창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자”를 각각 “군수”로 한다.

제23조 중 “관리자”를 “군수”로 한다.

별표 1부터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제15조 및 제16조 관련)

1. 주차료 (노동계곡 오토캠핑장 적용)

1대	추가차량	비 고
무료	5,000원/1대	○ 시설이용자에 한하여 사용 ○ 캠핑장 사정에 따라 적용여부 결정

2. 시설사용료

(단위 : 원)

○ 노동계곡 오토캠핑장

시 설 별	사용기준	성수기 (주말, 공휴일)	비수기		비 고
			주말, 공휴일	평일	
캐빈하우스	4인/1일	140,000	140,000	130,000	정원초과시 추가요금 별도부담
통나무집	4인/1일	120,000	120,000	110,000	
카라반	1대당/1일	120,000	120,000	110,000	
카라반사이트	1개소/1일	30,000	30,000	25,000	
오토캠핑장	1개소/1일	30,000	30,000	25,000	
평상	1회당/1일	30,000	30,000	25,000	

○ 꿈의대화 캠핑장

시 설 별	사용기준	사용요금	비 고
캠핑데크(자가텐트)	1개소/1일	20,000	
캠핑데크(임대텐트)	1개소/1일	40,000	
돛형텐트	1개소/1일	50,000	
돛하우스	1개소/1일	150,000	
주막거리 전통가옥	1개소/1일	150,000	
다목적무대설비 이용료	1일 주간 100,000, 야간 150,000, 주야 200,000 ※ 사용자의 과실로 장비고장시 사용자 책임.		

※ 1일 사용시간 : 당일 14:00 ~ 익일 11:00 기준이며, 퇴실시간 초과시

추가요금 징수(1시간초과 2시간까지 10,000원,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 이후 1일 사용료 추가)

※ 숙박시설 사용료는 기준정원 초과시 1인당(어린이 이상) 5,000원 추가징수

※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 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면은 1개 시설에만 적용한다.

※ 시설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별표 2]

시설사용(입장)권(제20조 관련)

NO ~ 캠핑장시설사용(입장)권(원부) ● 사용(입장)료 : (금 원정) ● 사용시설 : ● 사용기간 : ~ ● 사용자 - 주소 : - 성명 : 외 인 위와 같이 시설사용(입장)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캠핑장	NO ~ 캠핑장시설사용(입장)권(사용자보관용) ● 사용(입장)료 : (금 원정) ● 사용시설 : ● 사용기간 : ~ ● 사용자 - 주소 : - 성명 : 외 인 위와 같이 시설사용(입장)료를 납부하였음. 20 년 월 일 ()캠핑장
---	---

※ 전면 : 캠핑장 전경 또는 평창군 주요관광지 및 군 홍보문안 기재

※ 후면 : 시설현황 안내도 또는 캠핑장내 금지(유의)사항 등 기재

[별표 3]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제21조 관련)

구 분	내 용	반환 기준		비 고
		사용예정일 전	반환 기준	
숙박시설 캠핑시설	예약하고 선납된 경우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반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참조
		사용예정일 2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90반환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80반환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70반환	
숙박시설 캠핑시설	예약·선납된 경우로써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을 할 수 없거나 캠핑장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납		

[별표 4]

캠핑장 사용자 수칙(제24조 관련)

이곳 평창군 ()캠핑장에서의 편안한 휴식을 위하여 사용자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입 장

- 캠핑장의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셔야 하며,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설사용료

- 시설사용료는 사용자 징수기준에 준하며, 요금은 선불입니다.

3. 장 소

- 사용자께서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셔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4. 자 동 차

- 자동차의 출입은 23:00부터 07:00까지는 가능한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캠핑장내에서의 차량통행은 서행이며,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잔디밭의 차량 진입은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캠핑장내에서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5. 소 음

- 심한 소음은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 특별히 허가된 야간오락 장소에서도 23:00부터 07:00까지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정숙 시간은 21:00부터 07:00까지입니다.

6. 위 생

- 식수 수도꼭지는 식수만을 공급하며, 다른 용도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내 놓으셔야 합니다.

7. 동 물

- 모든 동물은 항상 사람의 감독 하에 있어야 합니다.
- 동물의 배설물 등으로 캠핑장을 더럽혀서는 안 되며, 캠핑장내에서는 반드시 줄로 매어야 합니다.

8. 화 재

- 캠프장내 잔디와 수목의 보호를 위하여 함부로 불을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 음식의 조리 및 불 사용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 캠프장내 불꽃놀이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9. 흥 보

- 캠프장내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는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10. 유실 또는 피해

-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

11. 긴급사태

- 위급을 요하는 경우와 호우·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